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mb131062@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2 - 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1019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 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 중, 기존 표시 유예기간 연장, 배출방법 문구 변경 등 수용 및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층 환경부 자원재

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팩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38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km ²)	비 고
합 계			71.41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29.02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하남시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향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18.09	
	과천시	과천·주암·막계동	9.35	
	부천시	역곡·춘의동	3.084	
	성남시	동원동	2.54	
	용인시	동천동	0.14	
	고양시	탄현동	0.77	
인천	계양구	굴현·동양·박촌·병방·상 야·방축동	8.40	
서울	강서구	오곡동	0.02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² 초과
	상업지역	200m ² 초과
	공업지역	660m ² 초과
	녹지지역	100m ²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m ²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 지	500m ² 초과
	임 야	1,000m ²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m ² 초과